

#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--

-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,  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 
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원5 채유미 의원입니다.
  
- 「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 
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 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  
-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  
- 서울특별시는 공공정책을 수립·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 
미리 예방하기 위한 절차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었는바,  
이러한 위원회의 회의 소집 시기와 위촉위원에 대한 제척·기  
피·회피 사유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  
율적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.

주요 개정내용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위원회에 대한 제척·기피·회피 사유를 조례에 명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·의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.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,  
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